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8

2021. 10. 1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0. 1.)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내외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로 변경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명칭을 명시함(안 제10조제1항)

나. “구 관내에 둔다”를 “별표와 같다”로 변경하여 지원시설의 위치를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2021.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1]에 따라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안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제1항 중 “지원시설”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사항은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항은 별표로 센터 주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한편, 시설 현황(※ 집행부 자료 재구성)은 별첨과 같은 바 설명과 함께 개소(2019. 12. 30)이후 운영 내용 및 그간의 운영 실적 등의 설명이 요구됨

---

1)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첨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현황

위 치	강남구 논현로86길 29, 1~2층(역삼동 718-32)
면 적	총 386.4㎡(116.9평) / 지상 1층(194.31㎡)~2층(192.09㎡)
임차 조건	임차보증금 100,000천원 / 월 임차료 9,570천원(부가세 포함)
임차 기간	2019. 3. 1. ~ 2024. 3. 1. (5년)
수탁체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위탁기간	2019. 6. 10. ~ 2024. 6. 9. (5년)
운영 인력	5명
운영 방식	1. 커뮤니티센터 공간 운영 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안전망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활력지원 프로젝트 등) 3.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신고 채널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등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 답 변 : 2019년 12월 개소 후에 코로나19에 따른 센터 휴관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관계망 형성 지원, 마음건강 관련 강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질 의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신지 거동은 불편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 답 변 : SOS돌봄센터에서 식사제공, 간병, 병원 동행서비스 등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각 동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 또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야쿠르트·우유·도시락 배달 사업, 전화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 의 :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답 변 : 우리 구에 8만 8천 명 정도의 1인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운영한 것이며 많은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본 센터를 방문하고 있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발굴 확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질 의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 답 변 : 서초구에서 올해 하반기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음

○ 질 의 : 1인가구 취약계층 중에서 우울증,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답 변 : 사업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8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내외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로 변경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명칭을 명시함(안 제10조제1항)

나. “구 관내에 둔다”를 “별표와 같다”로 변경하여 지원시설의 위치를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2021.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관내에 둔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제10조제2항 관련)

연 번	위 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2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
② 시설의 위치는 구 관내에 둔다.	② ---------- 별표와 같다.

신·구별표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별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제10조제2항 관련)
<table><tr><th>연번</th><th>위치</th></tr><tr><td>1</td><td>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2층</td></tr></table></td></tr>
</table>

〔별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제3항 제1호의 “예상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8급 이수진(02-3423-5799)